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및 발의경과

- 의안번호 : 173
- 발 의 자 : 김춘례·강동길 의원(찬성의원 12명)
- 발 의 일 : 2018년 10월 17일
- 회 부 일 : 2018년 10월 29일

2. 제안이유

- 자치구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,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에는 재정 지원이 전혀 없어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“자원봉사캠프”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5호).
- 나. 자원봉사캠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의3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,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,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.
- 나. 입법예고 (2018. 11. 1. ~ 11. 8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 의견

가. 개정의 취지 및 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(안제2조제5호)하고, 자원봉사캠프 활동에 따른 활동비 및 운영경비의 지원 근거(안제10조의3)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-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생활권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동 단위 자원봉사 거점인 ‘자원봉사 캠프’는 현재 411개(동주민센터 356개, 사회복지시설 등 55개)가 운영 중에 있으며, 대부분의 자원봉사캠프는 동주민센터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인 봉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비용 등 최소한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시설임에도 지원 근거는 없는 상황임.
 - ※ 자치구 차원에서 월 10만원 또는 분기별 20~3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, 캠프 상담가에게 1일 4시간 기준 5천원 ~ 10천원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음,
 - ※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캠프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(‘18년 기준 10개 캠프에 각 100만원)하고 있으나, 시 차원에서의 캠프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임.
- 동 개정조례안은 동단위 자원봉사캠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구성과 지역 의제 해결의 기본요소인 주민들의 초기참여에 대한 마중물 역할 및 동단위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·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자원봉사캠프의 역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봉사활동의 필요성 증대와 서울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감소에 대응하고, 민(民)이 앞장서고 관(官)이 지원하여 자원봉사의 기본정신 실현과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나. “자원봉사캠프” 정의규정 신설(안 제2조제5호)

- 안 제2조제5호는 “자원봉사캠프”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, 자원봉사센터의 인력부족과 지리적·심리적 접근성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생활권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캠프를 명문화하려는 것임.

※ “자원봉사 캠프”는 서울시장방침(제397호, 2005.7.27.)에 의해 시작되었으며, 자원봉사자의 수요·공급기관으로서 기존의 복지기관, 대학, 종교 시설, 기업 등에 부설로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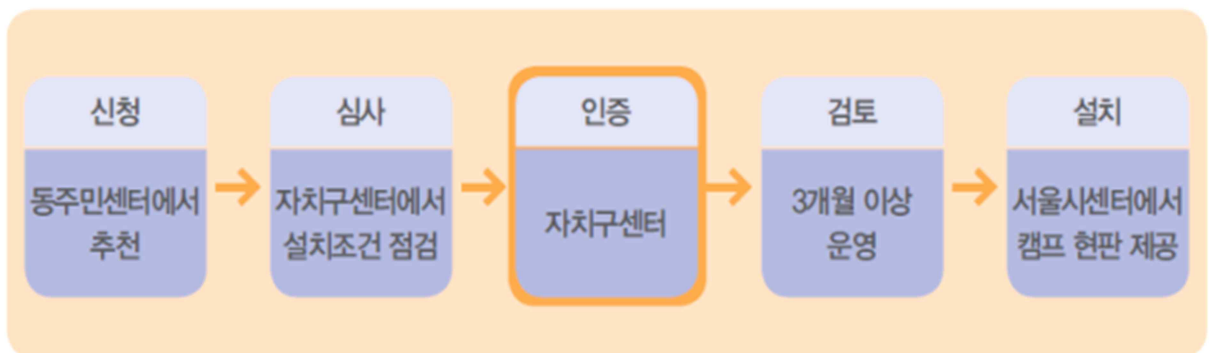
<p>캠프란?</p> <p>동주민센터 및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발견하고 발휘하여 동네의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지해주는 개방적 주민참여 플랫폼</p>	<p>봉사단체와는 어떻게 다른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회원기반의 조직경계가 분명한 직능단체 혹은 비공식적 봉사팀의 형태와는 달리 캠프를 운영하는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소모임, 단체, 주민 개인 등에게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형태이며, 동시에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동주민센터와의 공식적 연계를 통한 구 조화된 운영과 사업을 수행한다. ○ 동 캠프는 개방적 네트워크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성 이므로 상시적인 연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.
--	--

- 자원봉사캠프를 정의 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관계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맡아서 기여한 점과 풀뿌리 자원봉사참여를 체계적으로 확산·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짐.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“자원봉사캠프”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.</u></p>

- 정의 규정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다만, 자원봉사센터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로 할 것인지,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, 관련 법령에서 한두 조문에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(법제처 입안심사기준)과 외래어가 정의규정에 포함되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바, 이를 순화하여 대체할 수 있는 용어는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입법기술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.

〈자원봉사캠프 신청절차〉



- ① 신청 : 신규 캠프의 경우, 설치조건 확인 후 동주민센터 캠프 담당자가 자치구자원봉사 센터로 승인 신청을 한다.
- ② 심사 : 자치구센터에서는 설치조건에 부합하는 캠프인지 점검한다.
- ③ 인증 : 점검 후 신청접수 일주일 이내로 승인여부를 처리를 한다. 이에 따른 결과는 해당 동주민센터 및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로 통보한다.
- ④ 검토 : 승인된 캠프가 3개월 이상 운영(최소 월회 이상)되는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.
- ⑤ 설치 : 3개월 이상 지속 운영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로 캠프현판을 신청한다.

다. 경비지급의 적정성과 예산 지원의 범위 여부(안 제10조의2)

- 안 제10조의3은 자원봉사 활동단체인 “자원봉사캠프”에 대해 활동비 및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기여와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0조의3(자원봉사캠프 지원)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다만, 상위법령(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2조1))에서 무보수성, 자발성을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의 기본정신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- 또한, 현재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항(제18조)2)을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단체(종교단체, 기업봉사단체 등)에 대해 활동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.

- 1) **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(기본 방향)**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.
 1.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 2.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, 자발성, 공익성, 비영리성, 비정파성(非政派性), 비종파성(非宗派性)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3. 모든 국민은 나이, 성별, 장애, 지역,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4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·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2) 「**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8조(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한편, 동 개정조항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원봉사캠프의 활동 및 운영 예산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, 예산 확보 방안과 예산의 지원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전문위원	김태한	입법조사관	김정덕
------	-----	-------	-----

2018 자원봉사 캠프 현황

구분	1	2	3	4	5	6	7	8	9	캠프수	상담가수	봉사자수 (2017)
	동주민센터	기업	복지기관	학교	종교	공공기관	시민단체	의료기관	아파트			
강남구	14									14	56	7,609
강동구	5				1					6	23	385
강북구	14									14	151	201
강서구	19		6							25	92	82,577
관악구	21								1	22	195	6,509
광진구	15									15	128	1,190
구로구	15									15	82	6,471
금천구	10		1		2	2	3			18	103	737
노원구	19									19	181	43,390
도봉구	14				1					15	110	1,307
동대문구	14									14	186	10,170
동작구	4			1	1	3	2			11	43	86
마포구	16									16	155	11,295
서대문구	14			1			1			16	61	15,618
서초구	15				1					16	189	3,829
성동구	16									16	52	2,238
성북구	20				2					22	166	26,502
송파구	20									20	97	4,704
양천구	18									18	112	14,518
영등포구	18									18	164	2,691
용산구	16									16	105	1,685
은평구	16									16	81	7,478
종로구	8									8	15	740
중구	5									5	59	96
중랑구	10		1	2	7		1	1	14	36	129	3,722
총계	356	0	8	4	15	5	7	1	15	411	2,735	255,748

참고 2) 최근 3년간 봉사단 및 봉사자 등록현황, 운영 계획 및 추진실적

자원봉사 프로그램	2015	2016	2017
플뿌리단체 자원봉사 프로그램	24	63	136
아파트 자원봉사프로그램	11	9	
지역거점 자원봉사 프로그램	4	11	11
캠프 자원봉사 프로그램	19	37	
자치구센터 기타 특화 프로그램	14	-	8
소모임 활성화 프로그램	-	21 (신설)	19
어린이가족봉사 프로그램	-	-	6 (신설)
기업자원봉사 프로그램	3	9	6
임팩트 프로그램	36	폐지	폐지
계	111개	150개	186개